

2023. 7. 14.(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1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2133-3120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2133-3131
담 당 자	김유진	2133-3134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10쪽

‘주민감사’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구하세요!

- 금년 7월부터 ‘주민e직접’ 누리집 통해 주민감사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져
- 주민이 직접 청구서류를 제출하는 수고를 덜어 청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서울시 사무에 대해서 시민 50명의 연대 서명으로 ‘시민감사’ 청구도 가능

서울시 자치구 및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구 주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가 '23년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 그간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했는데, ‘주민e직접(juminegov.go.kr)’ 누리집을 이용하면 주민감사청구서 등록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 자치구별 서명인 수는 100~150명이며, 청구인명부 서명도 주민e직접(상동)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 보다 자세한 절차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감사청구→주민감사안내(인터넷 검색창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2133-3133)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그리고, 서울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의 사무 위탁기관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50명 이상의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 제도도 운영 중이다.
 - 시민감사청구 시 연대서명을 받아 직접 방문해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청구서 접수 후 서명은 ‘온라인 전자서명’ 방법도 가능하여 감사청구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 또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직권감사’도 시행하고 있다.
- 시민·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감사청구→시민·주민·직권감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감사를 ‘주민e직접(juminegov.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져서 더 많은 감사가 청구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앞으로도 감사 청구 제도에 대한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주민에 의한 감사가 청구되도록 하여 시정감시 및 행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붙임 시민·주민·직권 감사 개요 및 청구 절차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개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를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4일 출범하였으며,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주민(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위원회 구성: 위원장, 위원 6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기 3년(연임 불가)

2.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요

-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에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기할 수 있다.
-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되면 위원회는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이후 감사 청구인 연명부를 제출받아 감사청구사항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며, 청구인 명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고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의 감사 여부 결정에 따라 60일간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 주민감사 청구 절차

① 직접 방문 청구

주민감사청구	18세 이상의 주민 중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서울시장에게 문서로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대표자증명서 수령	서울시의 감사청구서 확인 후 서울시에서 교부(공문 시행)하는 대표자 증명서 및 대표자 위임신고증 수령(직접 또는 우편)
↓	
감사청구인 서명요청	대표자는 증명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자치구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에 서명요청
↓	
감사청구인 명부제출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청구인명부 제출
↓	
감사청구인 명부 확인	감사청구 연대서명인 확인 (해당 자치구 거주, 18세이상, 자치구 조례에 정한 수)
↓	
감사청구사항 공표 및 청구인 명부 열람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감사청구사항을 공표하고 청구인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감사청구 심의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여부 결정
↓	
감사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종료
↓	
감사결과 통보 및 공개	감사종료후 감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및 10일 이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요구, 감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	
조치요구 이행 및 통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치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울시장에게 60일 이내 통보
↓	
조치결과 통보 및 공개	감사대상기관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및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② 온라인 청구

※ 2023. 7. 1. 시행

<p>주민감사청구</p>	<p>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서 등록 (본인인증 필요) ※ 주민e직접 누리집: https://www.juminegov.go.kr/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페이코, 삼성패스, 통신사패스, KB모바일인증서, 카카오톡), 휴대폰인증</p>
↓	
<p>청구사항 공표</p>	<p>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감사청구사항 및 서명기간 등을 공표</p>
↓	
<p>대표자증명서 수령</p>	<p>청구사항 공표 후, 서울시에서 교부(공문 시행)하는 대표자증명서 및 대표자위임신고증 수령(직접, 우편 또는 온라인)</p>
↓	
<p>감사청구인 서명요청</p>	<p>대표자는 증명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자치구민을 대상으로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의 서명 요청 ※ 오프라인 서명 가능</p>
↓	
<p>감사청구인 명부제출</p>	<p>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18세 이상 해당 자치구 주민의 전자서명(본인인증 필요)이 일정 수(100~150명) 이상을 충족하면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청구인명부 제출</p>
↓	
<p>※ ‘감사청구인 명부 확인’ 이후 절차는 ‘직접 방문 청구 진행절차’ 와 동일</p>	

3. 시민감사 청구제도 개요

- 시민감사 청구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무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대표자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 시민감사청구가 제기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의결하고,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되면 60일간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감사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대표자

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2.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시민감사청구는 최초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 시민감사 청구 절차

① 위원회 방문접수

시민감사 청구	18세 이상 서울시민 50명 이상 감사청구서명을 받은 대표자 또는 상시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에 감사청구서 제출 (단, 시민감사청구는 최초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 18세 이상 서울시민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즉 서울거주의 국인도 청구자격 인정
감사청구인 명부 확인	감사청구 연대서명인 확인(서울거주, 18세 이상, 50명 이상)
↓	
감사청구 심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여부 결정
↓	
감사 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종료
↓	
감사결과 통보 및 공개	감사종료후 10일 이내 감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요구, 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	
조치요구 이행 및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치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울시장에게 보고
↓	
조치결과 통보 및 공개	감사대상기관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및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② 온라인 전자서명

<p>전자서명등록 신청서 제출 및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온라인 전자서명을 원하는 신청인은 '전자서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에 제출 - 접수: 시민감사팀 시민감사 접수 담당자가 신청서 접수
<p>↓</p>	<p>※ 접수시 감사청구 내용에 따라 감사청구로 진행 여부에 대해 상담 및 안내</p>
<p>청구인 수 충족여부 통보 및 전자 서명부 제출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이 50명이상이 되어 유효청구인 수를 충족할 경우 전자서명 신청자에게 청구인 수 충족 여부 및 전자 서명부 제출 요청 문자 메시지가 자동 통보
<p>↓</p>	
<p>신청자의 서명부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문자 메시지가 전자서명 신청자에게 전송된 후 전자서명 신청자가 전자서명부 제출 버튼 클릭
<p>↓</p>	
<p>감사청구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여부 결정
<p>↓</p>	<p>※ 전자서명 등록 신청자 참석하여 의견 진술</p>
<p>감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종료
<p>↓</p>	
<p>감사결과 통보 및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종료후 10일 이내 감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감사인사 포함)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요구 - 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p>↓</p>	
<p>조치요구 이행 및 보고</p>	<p>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치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울시장에게 보고</p>
<p>↓</p>	
<p>조치결과 통보 및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대상기관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및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4. 직권감사 개요

- 직권감사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감사이다.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공공사업 감시활동 중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직권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된 후 60일 이내 그 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요구하며 서울시 누리집에 공표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직무), 제24조(직권에 의한 감사)

제7조(위원의 직무)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5. 제2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감사

제24조(직권에 의한 감사) ① 위원은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청원의 조사·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감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직권감사 실시 절차

<p>직권감사 안전 발굴</p>	<p>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및 고충민원 조사·처리 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p>
<p>↓</p> <p>※ 직권감사 전환시 감사위원회 사전 협의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1팀장 메모보고)</p>	
<p>감사 실시 의결</p>	<p>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여부 결정</p>
<p>↓</p>	
<p>감사실시 및 결과 통보</p>	<p>감사 종료된 후 60일 이내 그 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요구</p>
<p>↓</p> <p>※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준함</p>	
<p>감사결과 공개</p>	<p>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p>
<p>↓</p> <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조치요구 이행 및 보고</p>	<p>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치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울시장에게 보고</p>